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6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 조배숙・백종헌・고동진

곽규택 • 박준태 • 김승수

김상욱 · 김민전 · 조은희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, 예술인·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 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,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.

그러나,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 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

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). 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단서 중 "지원"을 "지원, 제77조의11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"으로 한다.

제5장의4(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간 급여 등의 특례

제77조의11(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(이하 "육아기간 급여"라 한다)를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의 지급 요건·수준·기간과 신청·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7조의12(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,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,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- 제77조의13(준용) ① 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육아기간 급여"로 보고, 제73조제4항 중 "육아휴직 급여"는 "육아기간 급여"로, "육아휴직"은 "육아기간"으로, "육아휴직 급여 요건"은 "육아기간 급여 지급 요건"으로 본다.
 - ② 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급여등"으로 보고, 제73조제4항 중 "육아휴직 급여"는 "출산전후급여등"으로, "육아휴직"은 "출산 또는 유산·사산"으로, "육아휴직 급여 요건"은 "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"으로 본다.

-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·육아기간 급여·출산전후급여등의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5장"은 "제5장의4"로, "육아휴직 급여" 및 "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"는 각각 "육아기간 급여"로,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은 "출산전후급여등"으로, "사업주"와 "근로자"는 각각 "자영업자"로 본다.제1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제5장의4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휴가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기간 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6조(보험료) ① • ② (생 략) 제6조(보험료) ①·② (현행과 같 유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(3) ----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 라 징수된 고용안정 ·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 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지원, 제77조의11에 따른 육아 기간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 수 있다. 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----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<신 설> 대한 육아기간 급여 등의 특례 제77조의11(자영업자의 육아기간 <신 설>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 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

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(이하 "육아기간 급여"라 한다)를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

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

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의 지급 요건·수준·기간과 신청·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의12(자영업자의 출산전후 급여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

<신 설>

<신 설>

출산전후휴가 급여등, 제77조의 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 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, 지급수준 및 지 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 로 정한다.

제77조의13(준용) ① 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육아기간 급여"로 보고, 제73조제4항 중 "육아휴직 급여"는 "육아기간 급여"로, "육아휴직"은 "육아기간 급여"로, "육아휴직" 은 "육아기간"으로, "육아휴직" 그녀 요건"은 "육아기간 급여 요건"은 "육아기간 급여 지급 요건"으로 본다.

② 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

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급 여등"으로 보고, 제73조제4항 중 "육아휴직 급여"는 "출산전 후급여등"으로, "육아휴직"은 "출산 또는 유산·사산"으로, "육아휴직 급여 요건"은 "출산 전후급여등 지급 요건"으로 본 다.

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 ·육아기간 급여·출산전후급 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 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 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 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5 장"은 "제5장의4"로, "육아휴직 급여" 및 "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"는 <u>각각 "육아기간 급</u> 여"로.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 은 "출산전후급여등"으로, "사 업주"와 "근로자"는 각각 "자영 업자"로 본다.

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제116조(벌칙) ① -----

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5장의4에 따른 육아기간

-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
- ② (현행과 같음)